##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3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강대식·조지연·김종양

배준영 • 박정하 • 백종헌

안철수 · 유용원 · 김선교

김석기 • 구자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 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법률 제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	
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	
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u>3년</u>	<u>5년</u>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	
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